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1차 공탁법(2022. 4. 16.)

【문11】 공탁금 회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판결금을 변제공탁한 후 위 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되었다면 공탁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공탁원인소멸을 원인으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불능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기한 공탁금 회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형사피고인이 회수제한신고를 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공탁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 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도 공탁금이 회수되기 전이라면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공탁(가압류권자 甲)이 성립한 후 乙이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乙은 전부채권자로서 공탁관에게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11】 답4

- ① 공탁선례 제1-181호
- ② 대법원 1988. 4. 8. 자 88마201 결정
- ③ 공탁선례 제201010-1호
- ④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되며, 배당으로 지급받을 뿐 전부채권자로서 공탁관에게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지 못한다.

【문12】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기록의 열람은 공탁관이 열람을 승인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다.
- ②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공탁(공탁액 1억 원)을 하는 경우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 ③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후 발송한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교부청구할 때까지 반드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④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법무사회원의 전자서명 외에 청구인 본인의 전자서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2】 답4

-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기록의 열람은 공탁관이 열람을 승인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할 수 있다(행정예규 제 933호)
- ② 금전이면 전자공탁의 종류에 제한이 없다.
- ③ 발송한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공탁관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행정예규 제933호)
- ④ 규칙 79조 2항

【문13】 변제공탁의 내용과 관련하여 반대급부조건부 공탁과 채무액 일부의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 그 자체가 무효로 된다.
- ②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 부족분을 추가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채무액 전액에 대한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물 수령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3】 답2

- ①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061 판결
- ②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

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

- ③ 공탁선례 제2-77호
- ④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문14】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한 담보공탁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두 차례에 걸쳐 한 경우 제1심에서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그 자체로 담보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여 바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③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응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4】 답2

- ①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서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진행중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증공탁을 하고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경매절차정지결정을 받았으나 패소한 후, 항소하면서 다시 보증공탁을 하고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경매절차정지결정을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경우, 2차에 걸친 공탁은 각기 당해 심급에 관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1심에서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담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그것에 준하는 경우에만 담보의 사유가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탁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패소의 경우에는 소송의 완결 후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 최고기간 내에 그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259호).
- ③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판결
- ④ 대법원 2011. 2. 21.자 2010그220 결정

【문15】 변제공탁물의 출급 등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②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인판결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위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였다면 비록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하였더라도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청구하거나 피공탁자 1인이 나머지 피공탁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15】 답3

- ①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
- ②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 ③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기재

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22, 3139 판결).

④ 공탁선례 제2-133호

【문16】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1천만 원)를 부담하고 있는데, 위 채무에 대하여 丙의 채권가압류(청구금액 : 1천만 원)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양수인 丁)를 순차적으로 각 송달받고, 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 불확시 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공탁을 결합한 혼합공탁(1천만 원)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甲은 피공탁자를 ‘乙 또는 丙’으로 기재해야 하고, 공탁관은 乙과 丙에게 각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甲이 혼합공탁을 할 당시 채권양도(양수인 丁)의 효력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이 공탁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탁관은 공탁신청을 불수리해야 한다.
- ③ 丙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소에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양수인 丁은 乙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16】 답3

- ① 피공탁자는 양도인(乙) 또는 양수인(丁)으로 기재하고, 공탁통지도 乙과 丁에게 하여야 한다.
- ② 가압류 이후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④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문17】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7】 답2

- ②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예규 제1060호). 즉 배당으로 지급받지 않는다.

【문18】 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 ②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시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수용대상토지에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시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탁서 기재 자체로 보아 착오기재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 ④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때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18】 답3

- ①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 ② 공탁선례 제2-72호
- ③ 수용대상 토지에 등기부상 가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공탁선례 제2-191호).
- ④ 대법원 1986. 9. 19. 선고 85누280 판결

【문19】 甲은 乙에게 대여금 채무(100만 원)를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30만 원)과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30만 원)을 각 송달받고, 위 채무 100만 원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乙은 공탁금 중 4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공탁관에게 출급청구할 수 있다.
- ㄴ. 甲은 공탁금 중 40만 원 부분에 대한 공탁금을 민법 제489조 제1항에 기하여 회수청구할 수 있다.
- ㄷ. 위 공탁이 성립된 후 丙과 丁의 채권압류가 각 실효된 경우 乙은 각 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ㄹ. 위 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戊의 채권압류·추심명령(집행채권액 : 50만 원)이 공탁소에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지체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ㄴ, ㄷ
- ④ ㄱ, ㄹ

【19】 답1

- (ㄱ)(ㄴ) : ○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乙이 출급할 수 있고, 甲도 회수할 수 있다
- (ㄷ) : × 사유신고 이후에 압류가 실효된 경우에는 압류채무자가 배당절차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압류 실효를 이유로 공탁관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지 못한다.
- (ㄹ) : × 사유신고 이후에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추가로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문20】 甲은 乙(주소지 : 의정부시)에 대한 대여금 채무 5백만 원을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관할 공탁소 : 의정부지방법원)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乙의 위임을 받은 丙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특칙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공탁관에게 하여야 한다.
- ③ 乙이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입금계좌는 반드시 乙 명의이어야 한다.
- ④ 乙은 공탁금 출급청구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甲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한 경우 공탁통지서 제출이 면제된다.

【20】 답3

- ①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개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관할외에서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이의유보 의사표시는 공탁자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④ 5,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